제360회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 4 호

국회사무처

2018년5월24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大韓民國憲法 개정안

상정된 안건

1.	大韓民國憲法 개정안(대통령 제출)	. 1
О	의사진행발언	. 3
1.	大韓民國憲法 개정안(대통령 제출)(계속)	• (

(10시02분 개의)

○**의장 정세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를 개의하겠습니 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권영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 률안, 함진규 의원 대표발의로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 장병완 의원 대표발의로 조세특례제한법 일 부개정법률안 등 54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 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 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大韓民國憲法 개정안**(대통령 제출)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헌법 개 정안을 상정합니다.

이 헌법개정안은 지난 3월 26일 대통령이 제안 하여 같은 날 공고되었으며 공고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국무총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대통령께서 올해 3월 26일 발의하신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제안설명을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제가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와 경 위 및 헌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 드리고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려 합니다.

먼저 헌법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와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행 헌법은 1987년 의 6월 항쟁으로 탄생했습니다. 6월 항쟁은 대통 령을 내 손으로 뽑자는 국민의 열망을 표출했습 니다. 그에 따라 현행 헌법은 대통령직선제를 부 활하고 5년 단임제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는 1인 장기 집권을 근절했 고 평화적 정권교체를 가능케 했습니다. 그것만 으로도 현행 헌법은 그 시대의 가장 간절했던 소 명을 이행했습니다.

현행 헌법이 시행되고 3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기본권과 지방분권의 강화 같은 새로운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현행 헌법의 대통령 5년 단임제는 국회의원선 거 및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의 주기 차이 때문 에 전국적 선거를 너무 자주 치르게 하는 문제점 을 낳았습니다. 대통령 단임제는 책임정치의 구 현에 부적합하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러한 배경 등에서 학계와 국회에서는 수년 전부터 헌법 개정이 논의돼 왔습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는 주요 정당 후보들이 모두 개헌을 공약하면서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자는 데 뜻 을 같이했습니다. 개헌이 시대의 요구라는 인식 을 여야가 공유했던 것입니다.

국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헌법 개정을 논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회의 개헌 논의는 진척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국회의 개헌 논의만 기다리다가는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라는 여야 공통의 공약을 이행하기 어렵게될 것으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 발의권에 따라 개헌을 발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시대의 요구를 수행하고 국민께 드렸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 국민헌법 자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개헌안을 준비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특위는 여러 토론회, 간담회와 여론조사를 포함한 다양 한 방식으로 국민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여론 수렴에는 580만 명 이상의 국민이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개헌안 마련에 참여해 70만 건이 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개헌안을 법제처 심사 등 소정 절차를 거쳐 제가 3월 26일 발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은 헌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 리겠습니다.

첫째, 기본권과 국민주권을 확대·강화했습니다.

기본권으로서 생명권, 안전권, 알권리, 자기정 보통제권,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성별과 장애 등 에 따른 차별의 개선에 노력할 국가의 의무를 신 설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천부인권의 성격을 가진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 서 사람으로 확대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일가치 노동에 동일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국가에 부과했습니다. 고용안정 및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시행할 의무도 국가 에 지웠습니다.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도

록 했습니다.

국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발안제와 국민 소환제를 도입했습니다.

특히 헌법 전문의 대한민국이 계승하는 민주이념에 $4 \cdot 19$ 혁명에 이어 부마민주항쟁과 $5 \cdot 18$ 민주화운동, $6 \cdot 10$ 항쟁을 추가로 명시했습니다.

둘째,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 방자치를 강화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그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했습니다. 지방정부에 자 주조직권을 부여하고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을 강화했으며 자치재정권을 보장했습니다.

지방자치에서 실질적 민주주의가 실현되도록 자 치권이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시하고 주 민발안·주민투표·주민소환 제도의 근거를 신설 했습니다.

지방정부의 국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자 치분권회의를 신설하고 지방정부의 법률안 의견 제시권도 도입했습니다.

향후 국가 기능의 분산과 수도 이전의 필요가 대두될 경우에 대비해서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 률로 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셋째, 경제질서에서 불평등과 불공정을 시정하려는 국가 의지를 반영했습니다.

경제주체 사이의 조화뿐만 아니라 상생을 실현 하기 위해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국가가 특별한 제한 또는 의무를 부 과할 수 있도록 토지 공개념을 명문화했습니다.

농어민 지원, 사회적 경제 진흥, 소비자 운동 장려 등의 의무를 국가에 부과했습니다.

넷째, 정치개혁을 위한 몇 가지 조치를 반영했습니다.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국회의원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명시했습니다.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했습니다.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려면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정부의 법률제안권을 제약했습니다.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강화했습니다.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하고 대 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도입했습 니다.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에서 독립기관으로 바꾸 었습니다.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국정을 안정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 꿨습니다.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선출 방식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했습니다.

다섯째, 사법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대법관 임명에는 대법관추천회의의 추천을, 일 반법관의 임명에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을 먼 저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했습니다.

평시 군사재판을 폐지하고 비상계엄하의 군사 재판도 단심으로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더 두텁게 보호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구성에서 법관 자격이 없는 사람도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각계각층 의 의견이 헌법재판에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 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헌법은 1948년에 제정된 이래 아홉 차례 개정됐습니다. 그중에서 현행 헌법이 가장 오래 시행됐습니다. 그만큼 시대의 새로운 요구가 헌 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여쭈어 시대의 요 구를 반영하는 헌법개정안을 준비해 발의했습니 다.

헌법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이 스스로의 권리로 헌법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국회가 길을 열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께 그 기회를 드리도록 국회가 헌법개정안 을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24일 대통령 문재인 대독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세균** 국무총리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진행발언

(10시13분)

○**의장 정세균** 다음은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 으므로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 랍니다.

○김광수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의장님과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촛불혁명의 지엄한 명령인 개헌과 정치개혁의 성사를 위해서 대통령께서 발의하신 개헌안을 철회해 주실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진정으로 개헌이 성사되 기를 원한다면 지는 것이 이기는 길일 수 있습니 다. 솔로몬의 판결에 나오는 어머니처럼 개헌을 살리려면 대통령의 개헌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개헌안 철회는 협치의 시작이지만 개헌안 강행은 대치만을 부를 뿐입니다.

현재 여소야대 국회에서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입니다. 대통령의 개헌안 제출은 개헌 성사를 위한 마중물이 아니라 지방선거를 앞둔 책임 면 피용에 불과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개헌 무산의 책임에서 어느 정당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국정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집 권 여당의 책임도 큽니다. 제대로 된 개헌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청와대의 눈치만 보면서 어찌 촛불혁명을 계승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은 통렬히 반성해야 됩니다. 지난 대선 때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 집었습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국회를 파행 시키면서 당리당략과 기득권 지키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국회 앞 천막 에서 개헌 열차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안이 있습 니다.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은 원래부터 있던 제 도가 아닙니다. 지난 1972년 박정희 군부독재의 종신 집권을 위한 유신헌법 때 대통령 발의권을 끼워 넣은 것입니다.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민주 주의의 기본원리를 부정하는 독재의 잔재입니다.

적폐청산을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신 헌법의 잔재인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을 없애지는 못할망정 발의권을 행사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 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진영 논리에 가로막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 하고 있는 개헌과 선거제도 성사를 위한 대타협 이 필요한 때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개헌안을 철 회하고 국회는 연내 개헌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

어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이 참여하고 있는 야3당 개헌연대는 개헌 에 대한 공동 입장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야3당 개헌연대가 수차례 제안한 8인 개헌협 상회의를 즉각 개최하고 국회 헌정특위 활동 기한 연장, 연내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촛불시민혁명 완성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자 20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이제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연내 개헌 성사를 위해서 즉각 행동에 나서는 것 이 국민에 대한 국회의 의무이며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김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의원**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바른미 래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관영 의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진행발언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당이라는 책임감 때문에 청와대와 발맞춰 가야 한다는 상황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대 통령의 개헌안 부결이라는 상황이 진정 국민들을 위하고 민생을 위한 것인지 또 앞으로 국회에서 의 개헌 논의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관해서 대한 민국 국익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같이 깊이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하지만 100명 이상의 제1야당의 반대가 명약관화한 정치 현실에서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출하고 밀어붙이기를 강행하는 것도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의 개헌안 제출 과정에서 또 그 이후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 과정에서 여당이 어떠한 책임 있는 역할을 했는지에 관해서도 반성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제출한 개헌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 압박을 주어서 속도를 내게 하는 효과도 있었다 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민들은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통과되지 않을 것이 분명한 개헌안에

대한 표결을 시도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위한 정 쟁의 도구로 삼으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에 충분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판단과 의견은 매우 존중받아야 합니다마는 그 판단이 주는 무게감 때문에 현실 정치상황은 물론이고 국민 통합이라는 관점을 충분히고려해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좀 더 통 큰 자세와 인내심을 가지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개헌 논의를 지켜보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여당에 좀 더 폭넓은 협상 권한을 주십시오. '선거제도에 관해서 야당이 양보하면 권력구조에 대해서도 양보할 수 있다'고 하신 작년의 말씀을 꼭 실천해 주십시오.

이제는 대한민국 역사에 진정한 여야 협치를 통해서 31년 만의 헌법 개정에 초석을 놓았다는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인지 아니면 권력 유지에 더 관심을 가진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것인지에 관해서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새 시대에 걸맞은 헌법 개정 과정에 큰 역할을 하셔서 진정 대한민국역사에 길이 남는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20대 국회의원들,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이 개헌을 원하고 있습니다. 31년 만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라는 것, 촛불의 준엄한 명령이라는 것, 야당도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또 20대 국회에 주어진 절체절명의 사명이라는 것도 모두가인식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그동안 헌법 개정을 논의해 온 헌정특위의 활동이 1년 6개월이 되어 가고 있고 그활동 기한이 아직 한 달 남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등 야3당은 사실상 개헌 단일안을 만들었고 정당간 쟁점들에 대해서도 상당한 접근이 이루어져있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헌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서로 만나서 협상을 한다 면 저는 일주일이면 국회의 개헌안을 독자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방선거와 개헌에 관한 동시투표가 불가능해 져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는 여야 모두가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합 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개헌 찬성세력이 니 개헌 반대세력이니 하는 소모적인 정쟁은 자 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촛불 민심을 받들어서 제대로 된 개헌 논의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합시다. 우리 후대들이 살아갈 선진 대한민국의 초석을 놓는다는 간절한 마음으 寻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번에야말로 개헌과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의 개혁을 꼭 이루어 냅시다.

꺼져 가는 정치의 희망을 우리 모두가 같이 살 려서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보여 줍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김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 정의당 비례대표 김종대 의원입 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 러분!

오늘 역사적으로 대단히 훌륭하고 의미 있는 개헌안이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 문 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입니다.

정의당은 올 2월에 일찌감치 자체 개헌안을 마 련하고 국회 헌정특위를 통해 개헌과 정치개혁 논의에 임해 왔습니다. 그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 께서는 정의당 개헌안과 대단히 유사하고 많은 면에서 진일보한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셨습니 다.

대통령 개헌안은 기본권 신장, 지방분권 확대, 선거제도 개혁은 물론 노동 존중, 토지 공개념, 5·18 정신 계승을 담는 등 시대적 요구를 담은 훌륭한 개헌안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대통령의 개헌안이 국 회에서 표결에 부쳐진다면 부결됩니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이렇게 좋은 보배 같은 개헌 안을 결국은 부결시키는 그 모욕과 수치를 왜 스 스로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오늘 채택되지 못할 이 개헌안의 비극적인 운명은 바로 한국 정치의 적나라한 실패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통령과 국회가 개헌안을 두고 대립하는 모양새를 만든 책임은 당연히 국회에 있습니다.

모든 정치세력이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약 속해 놓고도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특히 자 체 개헌안을 만들지도 않고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절대 안 된다는 한국당은 지금까지의 개 헌 논의 태도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 입니다. 정의당도 책임을 느낍니다.

정의당은 오늘 표결에 불참할 것입니다. 이유 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회가 대통령의 개헌안 을 부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직 개헌과 정치개 혁이라는 과업을 이루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대통령 개헌안이 제출된 이후 국회 헌 정특위에서는 많은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습 니다. 한국당을 비롯해 모든 정당들이 연동형 비 례대표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정했고 권력구조 문제에 있어서도 총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논의 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 있는 진전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 의 개헌안이 제출되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런데 오늘의 표결은 그 남아 있는 마지막 희망의 불씨까지 꺼트리는 것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무엇에 책임을 느낍니 까? 대통령의 개헌안을 발의했다는 과정에 도덕 적 자기만족으로 결국은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 십니까, 아니면 개헌안을 통과시키는 결과에 책 임을 지는 겁니까?

누가 뭐래도 집권세력은 결과에 책임지는 세력 이고 이 개헌안을 발의했느냐가 아니라 개헌안을 성사했느냐 바로 그 결과로부터 국민들에게 심판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책임의 의무가 오늘 이 표결로 인해 무산된다는 점을 엄중히 말씀드립니 다.

지금이라도 대통령 개헌안이 철회되고 그 안을 포함한 개헌 논의가 이루어지면 바람직하겠으나 그것이 어렵다면 오늘 정의당은 본회의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회는 대통 령 개헌안의 내용을 포함해 그간 헌정특위의 논 의를 이어받아 기필코 개헌과 정치개혁의 과제를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제를 정의당은 가장 선도적으로 이뤄 나갈 것입니다. 정의당은 헌법

개정 논의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김종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大韓民國憲法 개정안(대통령 제출)(계속) (10시27분)

○**의장 정세균**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인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인영 의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국회가 지난 3월 26일 발의된 대 통령 개헌안을 의결해야 하는 날입니다.

우리 헌법은 130조 1항에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명문화했습니다.

바로 그날입니다. 이는 현행 헌법이 존속하는 한 대통령과 함께 우리 국회가 준수해야 할 책무 입니다. 우리 국회의원 역시 헌법을 준수하겠다 는 서약과 함께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마땅히 이 자리에 모두 모여 대통령 개헌 안 처리를 위해 의결에 임해야 할 시간입니다.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는 왜 지난 대통령선거 에서 한목소리로 개헌을 약속했습니까?

촛불시민혁명은 대통령의 탄핵을 넘어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의 수립을 명령했고 우리 국회는 이것이 고스란히 개헌의 열망으로 집약되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은 지극히 실망스럽습 니다. 국회 개헌안은 끝내 나오지 못했음은 물론 이고 대통령 개헌안 의결을 위한 오늘 본회의장 마저 텅 빈 의석으로 휑합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지금이라도 야당 국회의원들은 본회의장 출석을 하여야 합니다. 반대를 하더라도 이곳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것이 야당의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단순했습니다. 애초부터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부당한 것이었기에 따라서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하고 다시 개헌안 합의의 물꼬를 트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부당하지 않았

습니다. 우리 헌법이 128조 1항에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 된다." 이렇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그 자체가 지지부진하던 우리 국회에 더 속도를 내고 개헌안 합의를 위해 노력하도록 했던 긍정성도 있었습니다.

또한 대통령 개헌안은 대통령 개인만의 개헌안이 아니었습니다. 여당을 비롯 국회의 심도 있는, 깊은 토론들의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무엇보다 알토란 같은 국민의 열망들을 하나하나 모아서만들어진 것이었기에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랬기에 실제로 대통령의 개헌안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70% 안팎의 높은 국민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개헌안은 정략이 아니고 약속이었고 거짓이 아닌 진심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꿈과 열망을 고스란히 담으셨기 때문입니다. 결코 정치권의 이해와 정략만으로 판단되고 버려져서는 안 될 일입니다.

더욱이 국민은 우리 헌법이 법 중의 법이고 최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헌법을 걸고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누구도 경시하거나 정략으로 대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더라도, 이견이 있더라도 외면할 일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이곳에 나와서 투표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오늘 이 개헌 불발 대환란의 주범은 홍준표 대표입니다. 느닷없이 정략으로 개헌의 공약을, 국민의 합의를 걷어차 버렸습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개헌을 완성한다는 약속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 투표율을 높여서 야당에게 불리한 선거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딱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묻습니다. 개헌 연기가 야당에게 유리한 정세를 만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 려 정치에 대한 극혐을 불러오고 역으로 부메랑 이 되어 특정 야당의 몰락의 길을 재촉하고 있지 않습니까? 좌파 헌법이니 사회주의 헌법이니 낡 은 이념의 선동도 평화의 봄바람 앞에 하나도 먹 히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만 더 묻습니다. 특정 정당에게 유불리한 것이 국민에게 드린 약속보다 정말 더 우위에 선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오만이고 위선입니다. 개헌의 진정성은 없고 오직 정략과

위선으로 일관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 다. 더 심하게 정치 불복이고 대선 불복입니다.

그래서 이를 방치하는 오늘은 우리 국회가 헌 정사에 오욕을 남긴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공범이 되었고 이 모든 환란의 책임을 함 께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의를 향한 우리 국민의 행진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개헌이 불발 하더라도, 대통령의 개헌안이 의결 불성립과 계 류의 운명으로 귀결한다고 해도 반드시 우리 국 민의 정의는 진군할 것입니다.

오늘 만에 하나 개헌안이 통과되지 않는다 해 도 우리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회 내의 다른 정당들과 함께 더 좋은 날 더 좋 은 개헌안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 니다.

언젠가 더 나은 삶을 꿈꾸는, 내 삶을 바꾸는 개헌의 꿈이 반드시 이뤄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이라도 나라와 겨레의 장래를 위해 의석을 채우고 지혜를 모아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이라도 야당은 이 자리에 참 석하셔야 합니다.

국민의 여망을 받드는 우리 국회가 되길 바라 면서 찬성토론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의장 정세균** 이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 의원**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 리고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사하갑의 최인호 의원입니다.

대통령께서 발의하신 헌법개정안의 의결 시한 이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국회는 헌법 제130조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하여야만 합니다. 다 른 법도 아닌 헌법상의 의무 조항입니다. 그러나 헌법개정안 의결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지금 이 시각 본회의에 불참하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대다수 야당의 태도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모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면서 선서를 합니다. 선서문의 첫 문장에는 '나는 헌법 을 준수하고……'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입니다. 국민들 앞에 엄숙히 약속한 선서는 어디로 갔습 니까?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한 헌법적 의무는 야 당 국회의원들에게 과연 무엇입니까? 정쟁 속에 서는 헌법적 선서를 내팽개쳐도, 헌법을 위반해 도 그 모든 것이 합리화되는 것입니까?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법을 4년째 위헌 상태로 방치하고도 별다른 문제의식 을 느끼지 못하는 자유한국당과 야당은 헌법 제 130조 60일 이내의 의무 의결 조항도 안 지키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왜 발의했습니까? 6 · 13 지방선거 때 동시 개헌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회 내의 모든 정당의 대선후보들이 함께 약속한 것 입니다. 더구나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과 달라도 국회에서 합의한다면 존중하겠 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러나 야당들은 대통령의 개헌안이 사회주의 개헌이라면서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으로 몰고 갔 고 야당의 개헌안을 내놓으라는 국민적 요구에 떠밀리자 사실상의 내각제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국민의 70%가 대통령제를 지지하는데 어떻게 내 각제 개헌을 한단 말입니까? 비현실적이고 무책 임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동안 개헌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회는 국민의 보편적인 의사를 반영하 지 못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묵살했다는 비판을 받아도 변명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투표는 30년 만의 국민 개헌을 성사시킬 절호의 기회입니다. 국회는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는 국민 개헌의 기회만 놓친 것이 아니라 국민들 의 신뢰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첫째, 모든 정당 후보들의 6월 동시 개헌 약속 을 스스로 뒤집고 있습니다.

둘째,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 권리를 알고도 고 의로 방치했습니다.

셋째, 발의된 개헌안을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헌법적 의무규정을 아무렇지 않게 무시하 고 있습니다.

개헌을 논의하면서 야당 의원들과 의회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헌법적 틀을 무수히 논의했습니 다. 그러나 의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대전제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입니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국회가 어떤 권한을 행사하고 강화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은 6월 동시 개헌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행동에 대해서 반성해야 합니다. 헌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무감해져 버린 모습을 성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보편적 의사와동떨어져서 당리당략에만 매몰되는 행태로부터환골탈태해야 합니다. 반성과 성찰, 혁신 없이 또다시 개헌을 거론한다면 이는 국민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지금의 야당, 현재의 국회가개헌을 논의할 자격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처리되지 못할 그리고 사실상 부결될 대통령 개헌안은 대통령만의 개헌안이 아닙니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개헌을 논의할 국회의 자격 역시 국민들로부터 부결될 것이라는 점을 똑똑히 인식해야 됩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 는 데는 무수한 노력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과 야당은 본회의에 출 석해야 합니다. 국회를 향한 냉엄한 민심을 직시 하고 경청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최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현희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강남을 국회의원 전현희입니다.

국민의 염원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 국회 의결 마지막 날인 오늘 저는 국회가 이제는 정쟁을 멈 추고 다 함께 시대적 과제인 개헌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절박한 호소를 드리기 위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개정된 지 약 3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변화된 시대적 가치를 담기 위한 국민적인 열망을 모아서 2017년 1월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기점으로 개헌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개헌특위 위원으로서 약 반년간 논의와 토론에 참여했지만 그 결과

는 지금 참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할 따름입 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6·13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지난 19대 대선 당시 모든 정당의 대통령후보들 이 한목소리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 어떤 정쟁 의 대상이나 정략적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이 시대와 국민들이 바라는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선거 이후에 국회는 국민의 요구에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대의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이 된 이후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대부분의 야당은 본인들의 대통령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6·13 지방선거 동시 개헌 약속을 저버리고 개헌 논의를 오직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1년이 넘는 긴시간이 흘렀지만 국회 개헌 발의는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이에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개헌발의권을 행사하여 정부 개헌안을 국회로 송부하였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통한 국민들의 의견을수렴한 안으로 87헌법 이후에 변화된 시대적 과제를 담은 그런 국민들의 열망을 담은 헌법 개헌안입니다.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담아냈으며 진정한 권력 분산과 지방분권의 시대적 과제를 구현하는 등 이 시대가 진정 바라고 국민들이 염원하는 다양한 의견을 온전히 담은 그런 결과물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에 의하면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한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법인 헌법을 무시하는 선례를 결코 남겨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인 개헌 논의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국회는 헌법이 명령하는 대로 본회의를 열어서 대통령 개헌안을 표결에 부치는 것이 마땅한 순리이고 의무입니다.

국민께서는 지난 1년간 국회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국회의 책임을 다하라며 끈기 있게 인내해 주셨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들 60% 이상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간 국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국민들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개헌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까? 국회는 한 발짝도 개헌 논의를 진행시키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하며 그 과정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지난 4월 27일 6 · 13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위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통과 시한조차 국회는 정 쟁을 일삼으면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야당은 이 러한 논의조차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며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 주지 못했습니다. 국민께 진심으로 송구한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통령 개헌안 의결 마지막 날인 오늘 저는 여 러분들께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국민은 높아진 시민의식과 함께 참여민주주의를 토대로 국민발 안제·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의 확대를 요 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우리들의 주권자이고 헌법의 주인입니다.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을 섬 겨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권자인 국민의 염원을 담은, 명령을 담은 헌 법개정안 지금이라도 국회는 발 벗고 나서야 됩 니다.

.....

개헌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더 이 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고 국민의 명령입 니다.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선 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한마음으로 다시 한번 개헌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 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전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의원**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 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ㆍ금산ㆍ계룡 출신 김 종민 의원입니다.

앞서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찬성 취지의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난 1년 6개월 가까이 국 회 개헌특위에서 활동하면서 느낀 소회를 우리 헌법정신의 근본을 한번 돌아보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1년 6개월 개헌특위 하면서 내린 결론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문제는 국회다, 국회가 바 뀌어야 한다는 게 결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헌

법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 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이 어디 가 있 습니까? 실제 국민들이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 까?

우리가 속도위반을 해서 차를 세워서 과태료 5 만 원 물리는 이 권력이 실제 현장권력입니다. 현실의 권력입니다. 인신구속을 해서 재판해서 벌금형을 내리는 이 권력이 현장권력입니다.

실제 권력은 집행권력에 가 있습니다. 행정집 행권력, 사법집행권력이 현실의 권력입니다.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본질적 권력, 이 본질적 권력이 집행권력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합니까? 어떻 게 국민 통제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문민통 제를 할 수 있습니까?

이 문민통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대의주권이고 대의권력입니다. 대의권력이 집행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해라, 국민적으로 통제해 라 이 명령을 내려서 새로 발명해 낸 인류 정치 사의 가장 위대한 발명이 이 대의권력입니다.

문제는 대의권력이 국민주권에 위임받은 이 방 향과 헌법정신에 어긋날 때 민주공화국의 기본질 서는 무너집니다. 저는 이 대의권력이 과연 국민 주권을 대변하고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이번 개 헌 논의 과정에서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다, 거기 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것이 1 년 6개월 개헌 논의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헌 논의 과정에서 이 대의권력을, 집행권력 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더 줘야 된다 이런 논 의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 니다. 그게 민주공화국 국민주권을 확대하는 길 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반대합니다. 국민주권을 확대 하는 길인데 왜 반대합니까? 국회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당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당과 국 회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 개헌 열차는 진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 개헌 논의 과정에서도 이런 부실 · 무능 국회, 이 대의권력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 습니다. 6월 13일 국민투표하자고 약속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신뢰를 구했습니다. 당리당략에 어긋 난다고, 당리당략에 손해가 된다고 이 약속을 뒤 집었습니다.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왜? 이게 위헌 입니다. 이게 당리당략에 어긋난다고 이걸 안 하 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발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미뤄서는 이 국민적 개헌 요구가 실현될 수 없다고 대통령이 발의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발의한 것은 헌법의 명령입니다. 헌법의 권한입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입니다. 찬성이든 반대하든 국회는 이 대통령 발의안에 대해서 토론해야 됩니다. 의논해야 합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의논하라고 대의기관 아닙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의논하라고 국회를 만들어놓은 겁니다. 의논을 안 했습니다. 이게 당리당략에 어긋난다고 의논 안 했습니다.

저는 대의주권·대의권력의 핵심은 국민주권을 대변하는 겁니다. 나의 의견, 우리 당의 의견, 심 지어는 지지자들의 요구까지도 뛰어넘어서 우리 공동체의 공공선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 고 토론해서 결론을 내려서 '이것이 내 의견이 아닙니다. 내 지지자의 의견이 아닙니다. 우리 대 한민국 국민주권의 의견입니다.' 이렇게 국민 앞 에 내놓는 이 토론의 의무가 우리 국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개헌 논의 과정의 가장 핵심은 국회가 대의 기능을 포기한 것, 당리당략을 위해서 오로지 우리 당의 의견, 내가 생각한 내 이 좁은 소견 이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의논하지 않은 것, 법에 정해진 의논을 이행하지 않은 것 이게 우리국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는 국민주권을 대변하지 않는, 국민주권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향해서 의논하지 않는 국회가 계속된다면 이번 대통령 발의안뿐만 아니라 어떤 식의 개헌 논의 도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 저는 다시 한번 대 의주권을 담당한 국회가 국민주권을 대신해서 오 로지 국민주권의 공공선이 무엇인지 이것을 위해 서 끊임없이 의논할 의무를 이행하는 국회가 되 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김종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4항에 따라 기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

하겠습니다.

권미혁 의원, 김병욱 의원, 권칠승 의원, 김종 민 의원, 박경미 의원, 금태섭 의원, 신동근 의원, 이철희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 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권영진**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 리겠습니다.

오늘 투표는 기명투표입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투표용지 의 원성명란에 기재된 본인의 성명을 확인하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 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시면 되겠습 니다.

'가' 또는 '부'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표가 유효하게 성립될 경우 투표 결과에 대한 찬반 의원의 성명은 회의록에 게재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52분 투표개시)

○의장 정세균 아직 투표를 마치지 않은 의원들 께서는 서둘러서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를 마치지 않은 의원들께서는 신속하 게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1시03분 투표종료)

더 이상 투표를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바 총 114매로서 투표하신 의 원수가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개헌안 투표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회는 헌법 제130조 1항에 따라 대통령 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째가 되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의결 절차를 진행 했습니다. 하지만 명패수 확인 결과 투표 참여 의원님들의 숫자가 개헌안의 의결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법적으로 투표불성립의 상황입니다.

30여 년 만에 추진된 이번 개헌이 투표불성립 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점 대단히 아쉽고 안 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헌 추진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 다. 여전히 우리 국민 대다수는 새로운 대한민국 의 기초가 될 새 헌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 안은 사실상의 부결로 매듭지어졌지만 국회발 개 헌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에 우리 국회가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내놓고 국 민의 선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당장 한 달 뒤인 6월 말이면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의 활동 시한이 종료됩니다. 우리 20대 국회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개헌특위를 구 성하고 지난 1년 반 가까이 헌법 개정을 위해 머 리를 맞대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 결 과물을 내놓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여야 모두가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대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6월 안에 여야가 최대한의 지혜를 모아 국회 단일안을 발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미룰 명분도 시간도 없습니다. 제헌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개헌이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야당으로부터 여 러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을 수호해야 할 우리 국회가 헌법 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기에 의장으로서 외로운 길을 선택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년 전 저는 의장 취임 일성으로 개헌의 필요 성을 제기했습니다. 비록 임기 중에 개헌이라는 옥동자를 보지는 못했지만 평의원으로 돌아가서 도 20대 국회가 개헌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최대

한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 의원(125인)

강 병 원 강 창 일 강 훈 식 고 용 진 금 태 섭 권 미 혁 권 칠 승 기 동 민 김 관 영 김 광 수 김 두 관 김 경 협 김 병 관 김 민 기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상 희 김 영 주 김 영 진 김 영 춘 김 영 호 김 정 우 김 종 대 김 종 민 김 진 표 김 태 년 김 종 훈 김 철 민 김 해 영 남 인 순 노 웅 래 김 한 정 노 회 찬 도 종 환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광 온 민홍철 박 경 미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영 선 박 완 주 박용진 박 주 민 박 재 호 박 정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재 현 백 혜 련 변 재 일 서 영 교 서 형 수 훈 소 병 훈 설 손 금 주 손 혜 원 송 기 헌 송 영 길 송 옥 주 신 경 민 신 동 근 신 창 현 심 기 준 심 상 정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호 영 어 기 구 오 영훈 오 제 세 우 원 식 원 혜 영 위 성 곤 유 동 수 유 승 희 유 은 혜 윤 관 석 윤 소 하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이 상 민 이 수 혁 이용주 이 석 현 이 용 득 이 용 호 이 원 욱 이 인 영 이재정 이정미 이 종 걸 이 철 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해 차 0] 훈 인 재 근 임 종 성 장 병 완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혀 희 전 혜 숙 정성호 정 세 균 정재호 정 춘 숙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진 선 미 진 영 최 운 열 최 인 호 추 미 애 추 혜 선 표 창 원 한 정 애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황 회

○개의 시 재석 의원(113인)

강 병 원 강 훈 식 고 용 진 권 미 혁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광 수 김 병 관 김 두 관 김 민 기 김 병 욱 김 상 희 김 영 주 김 영 진 김 영 춘

김 영 호 김정우 김 종 대 김 종 민 김 종 훈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한 정 노 웅 래 김 해 영 남 인 순 노 회 찬 도 종 환 문 희 상 민병두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완 주 박용진 박 영 선 박 재 호 박 정 박 주 민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재 현 백 혜 련 변 재 일 서 영 교 서 형 수 설 훈 소 병 훈 손 혜 원 송 영 길 송 옥 주 송 기 헌 신 경 민 신 동 근 신 창 현 심기준 심 상 정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호 영 어 기 구 오 영 훈 오제세 워 혜 영 위 성 곤 유동수 유 은 혜 윤 관 석 윤 후 덕 이 개호 윤 소 하 윤 호 중 이상민 이수혁 이용득 이 용 주 이 원 욱 이 인 영 이재정 이정미 이종걸 이철희 이 춘 석 이 학 영 훈 이 해 찬 0 인 재 근 임 종 성 장 병 완 전 재 수 전 혜 숙 정성호 정세 균 정 재 호 정 춘 숙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진 선 미 진 영 최 운 열 최 인 호 추 미 애 추 혜 선 표 창 원 홍 영 표 홍 의 락 한 정 애 홍 익 표

○산회 시 재석 의원(109인)

강 창 일 강 병 원 강 훈 식 고 용 진 권 미 혁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협 김 두 관 김 민 기 김 병 관 김병기 김 영 주 김 병 욱 김 상 희 김 영 진 김 영 춘 김 영 호 김정우 김 종 민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한 정 김 해 영 남 인 순 노 웅 래 도 종 환 문 희 상 민 병 두 민홍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영 선 박 완 주 박용진 박 재 호 박 정 박 주 민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재 현 백 혜 련 변 재 일 서 영 교 서 형 수 훈 소 병 훈 손 혜 원 송 기 헌 설 송 영 길 송 옥 주 신 경 민 신 동 근 신 창 현 심기준 안 규 백 안 민 석 아 호 영 어 기 구 오 영 훈 오 제 세 우 원 식 위성 곤 유동수 유승희 유 은 혜 윤 관 석 윤 호 중 윤 후 덕 이 수 혁 이 개 호 이 상 민 이 석 현

이 용 득	이 원 욱	이 인 영	이 재 정
이 종 걸	이 철 희	이 학 영	이 해 찬
이 훈	인 재 근	임 종 성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재 호	정 춘 숙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진 선 미	진 영
최 운 열	최 인 호	추 미 애	표 창 원
한 정 애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황 희			

○청가 의원(5인)

김성수 김수민 김종희 심재권 유성엽

○국회 참석자

사 무 총 장 김 성 곤 의 사 국 장 권 영 진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무 국 총 리 0 낙 연 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 상 외 부 장 경 화 11/ 관 강 통 일 부 장 관 조 명 균 법 무 부 박 장 관 상 기 방 부 장 영 무 국 관 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 종 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밴 운 규 후 보건복지부장관 박 능 고용노동부장관 영 주 김 해양수산부장관 김 영 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홋 좆 학

○출석 정부위원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 용 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정 식 읶 대 행 정 안 전 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 회 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장관직무대리) 수 김 현 환 경 부 차 관 안 병 옥 여성가족부차관 0 숙 진 국토교통부제2차관 렬 김 정

【보고사항】

○의안 제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8. 5. 21. 이명수·김성찬·박인숙·김승희· 강석진·성일종·정태옥·김재원·홍철호· 함진규 의원 발의) 5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8. 5. 21. 송옥주·안규백·노웅래·이찬열· 권칠승 · 김상희 · 이원욱 · 이수혁 · 김성수 · 이용득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 발의)

(2018. 5. 21. 황주홍·이찬열·장정숙·조배숙· 김광수 · 윤영일 · 김경진 · 정인화 · 정동영 · 장병완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 발의)

(2018. 5. 21. 장병완·김광림·신용현·김경진· 박선숙 · 윤영일 · 박정 · 이채익 · 이용주 · 김광수・이용호・조배숙・정동영・황주홍・ 김중로·장정숙·이찬열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 발의)

(2018. 5. 21. 소병훈・박정・인재근・남인순・ 박주민·김영호·안민석·강창일·송석준· 김영진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8. 5. 21. 박광온·김해영·김종민·권칠승· 전현희 · 최인호 · 이학영 · 정재호 · 이춘석 · 유관석 의원 발의)

이상 5건 5월 23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 발의)

(2018. 5. 21. 박경미·신창현·이동섭·박정· 김영호·강창일·장정숙·김경진·박주민· 한정애·강훈식 의원 발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 발의)

(2018. 5. 21. 송기헌·송옥주·정춘숙·유은혜· 백혜련 · 권칠승 · 유동수 · 우원식 · 위성곤 · 김해영·박재호·심기준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23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 의원 대표 발의)

(2018. 5. 21. 여상규·윤종필·장제원·문진국· 정갑윤 · 김도읍 · 이군현 · 최교일 · 정운천 · 이채익 의원 발의)

5월 23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5. 21. 황주홍·이찬열·장정숙·조배숙· 김광수 · 유영일 · 김경진 · 정인화 · 정동영 · 장병완 의원 발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2018. 5. 21. 박성중·성일종·박명재·이종명· 문진국 · 윤한홍 · 이종배 · 홍철호 · 엄용수 · 송희경 의원 발의)

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특별 **회계법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2018. 5. 21. 소병훈·박정·인재근·남인순· 박주민·김영호·안민석·강창일·송석준· 김영진 의원 발의)

이상 3건 5월 23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 발의)

(2018. 5. 21. 손금주·김종회·장정숙·박선숙· 김경진 · 소병훈 · 김광수 · 김종민 · 이용호 · 정인화 · 유동수 의원 발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2018. 5. 21. 송기헌·백혜련·권칠승·강훈식· 유동수 · 우원식 · 위성곤 · 김해영 · 박재호 · 심기준 의원 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 발의)

(2018. 5. 21. 최도자·이동섭·이찬열·김광수· 주승용 · 김삼화 · 박선숙 · 김중로 · 유동수 · 윤종필 의원 발의)

이상 3건 5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

(2018. 5. 21. 이명수·박성중·함진규·박인숙· 김승희 · 경대수 · 김성찬 · 홍철호 · 김재원 · 홍문표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8. 5. 21. 박광온·김해영·김종민·권칠승· 전현희 · 최인호 · 이학영 · 정재호 · 이춘석 · 윤관석·신경민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

(2018. 5. 21. 박광온·김해영·김종민·권칠승·

전현희·최인호·이학영·정재호·이춘석· 윤관석·신경민 의원 발의)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 발의)

(2018. 5. 21. 박광온·김해영·김종민·권칠승· 전현희·최인호·이학영·정재호·이춘석· 윤관석·신경민 의원 발의)

이상 4건 5월 23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2018. 5. 21. 윤관석·이찬열·안규백·박경미· 권미혁·신창현·장정숙·김성수·장병완· 위성곤 의원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018. 5. 21. 함진규·이완영·강석진·여상규· 이명수·박덕흠·이찬열·곽대훈·김성원· 박완수 의원 발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018. 5. 21. 함진규·이완영·강석진·여상규· 이명수·박덕흠·이찬열·곽대훈·김성원· 박완수 의원 발의)

이상 3건 5월 23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청년기본법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8. 5. 21. 이명수·강효상·권칠승·김병관·김종훈·김중로·김해영·박순자·박정·박찬대·신보라·염동열·위성곤·이채익·임종성·정유섭·정인화·채이배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5. 23. 황주홍·이찬열·장정숙·조배숙· 김광수·윤영일·김경진·정인화·정동영· 장병완 의원 발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 발의)

(2018. 5. 23. 박인숙·정진석·이종구·김경진· 강석진·유동수·이명수·이종배·김현아· 박완수 의원 발의)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 발의)

(2018. 5. 23. 박인숙·김성원·최도자·김순례· 전혜숙·이군현·이종구·유동수·김현아· 정우택 의원 발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2018. 5. 23. 권칠승·박정·안규백·송기헌· 김해영·홍의락·신창현·이춘석·정재호· 설훈 의원 발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

(2018. 5. 23. 홍의락·강길부·한정애·소병훈· 김성수·권칠승·변재일·손혜원·문희상· 조정식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 발의)

(2018. 5. 23. 신창현·김병기·송기헌·위성곤· 박찬대·권칠승·박정·김철민·김영호· 김한정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 발의)

(2018. 5. 23. 황주홍·이찬열·장정숙·조배숙· 김광수·윤영일·김경진·정인화·정동영· 장병완 의원 발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8. 5. 23. 송옥주·안규백·박정·노웅래· 한정애·이찬열·권칠승·김상희·이원욱· 이수혁·김성수·이용득 의원 발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2018. 5. 23. 박선숙·이찬열·박지원·윤영일· 장정숙·김현권·권칠승·이용호·김관영· 박주현·윤후덕 의원 발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 발의)

(2018. 5. 23. 변재일·홍의락·전혜숙·김병욱· 고용진·김성수·신경민·이수혁·신창현· 안규백·홍익표 의원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 발의)

(2018. 5. 23. 김상훈·송석준·윤영석·정태옥· 김재원·이완영·강석진·심재철·김광림· 정진석·이학재·김세연·김석기 의원 발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18. 5. 23. 김상훈·송석준·윤영석·정태옥· 김재원·이완영·강석진·심재철·김광림· 정진석·이학재·김세연·김석기 의원 발의)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대표발의)

(2018. 5. 23. 김상훈·송석준·윤영석·정태옥· 김재원 · 이완영 · 강석진 · 심재철 · 김광림 · 정진석 · 이학재 · 김세연 · 김석기 의원 발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2018. 5. 23. 강석진·김상훈·김태흠·박인숙· 송석준 · 이명수 · 주광덕 · 주승용 · 최도자 · 함진규 의원 발의)

수소경제활성화법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2018. 5. 23. 이채익·홍문종·박맹우·여상규· 정갑윤 · 최연혜 · 김규환 · 신보라 · 주호영 · 장병완 의원 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

(2018. 5. 23. 손혜원·김경협·김영호·문희상· 박주민 · 서영교 · 신창현 · 안규백 · 이춘석 · 홍의락 의원 발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18. 5. 23. 김상훈・강석진・박인숙・박명재・ 김순례・추경호・유동수・이명수・장석춘・ 김재원 의원 발의)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혜원 의원 대표발의)

(2018. 5. 23. 손혜원·김경협·김영호·문희상· 박주민 · 서영교 · 신창현 · 안규백 · 이춘석 · 홍의락 의원 발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

(2018. 5. 23. 박주민·신창현·원혜영·권미혁· 유승희 · 박범계 · 한정애 · 황주홍 · 임종성 · 유동수 의원 발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2018. 5. 23. 박명재·김정재·김성원·김재원· 강석호 · 박성중 · 신보라 · 임이자 · 원유철 · 박덕흠 의원 발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군현 의원 대표 발의)

(2018. 5. 23. 이군현·박인숙·여상규·김용태· 오세정 · 박명재 · 이개호 · 김철민 · 이완영 · 김기선 · 이현재 의원 발의)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 발의)

(2018. 5. 23. 손혜원·김경협·김영호·문희상· 박주민 · 서영교 · 신창현 · 안규백 · 이춘석 · 홍의락 의원 발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2018. 5. 23. 정병국·김상훈·원유철·김삼화· 홍문표 · 김관영 · 신용현 · 김수민 · 이찬열 · 성일종 의원 발의)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

(2018. 5. 23. 박주민·신창현·원혜영·권미혁· 유승희 • 박범계 • 한정애 • 황주홍 • 임종성 • 유동수 의원 발의)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

(2018. 5. 23. 손혜원·김경협·김영호·문희상· 박주민 · 서영교 · 신창현 · 안규백 · 이춘석 · 홍의락 의원 발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

(2018. 5. 23. 손혜원·김경협·김영호·문희상· 박주민 · 서영교 · 신창현 · 안규백 · 이춘석 · 홍의락 의원 발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

(2018. 5. 23. 표창원·김부겸·소병훈·남인순· 박정 · 유동수 · 김영호 · 이개호 · 위성곤 · 김병기 · 한정애 · 노웅래 · 이철희 의원 발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

(2018. 5. 23. 손혜원·김경협·김영호·문희상· 박주민 · 서영교 · 신창현 · 안규백 · 이춘석 · 홍의락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 발의)

(2018. 5. 23. 송옥주·이용득·박선숙·김중로· 소병훈 · 유동수 · 박정 · 표창원 · 한정애 · 이정미 의원 발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8. 5. 23. 송옥주·이용득·박선숙·김중로· 소병훈 · 유동수 · 박정 · 표창원 · 한정애 · 이정미 의원 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 발의)

(2018. 5. 23. 표창원·김성수·박주민·소병훈·남인순·이개호·위성곤·김병기·한정애·김영호·노웅래 의원 발의) 이상 32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의안 철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 의원 대표발의)

(2018. 4. 18. 김석기·이명수·김승희·김규환· 송희경·김광림·정갑윤·박인숙·박명재· 김성찬·추경호·박맹우 의원 발의) 5월 21일 발의자 철회 요구

○청원 제출

부부평등법 제정에 관한 청원

(2018. 5. 21. 이인철로부터 김관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

5월 2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서면답변서 제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사업 현황 및 실적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북한 대규모 해킹공격 시도 관련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이상 2건 2018. 5. 23. 정부 제출) (이상 2건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

○보고서 제출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2018. 5. 23. 식품안전정보원 제출) 5월 2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송부